

이사회 운영 규정

국일제지 주식회사

제 1 장 총 칙

제1조 【목적】

이 규정은 국일제지 주식회사 (이하 '회사'라 칭함) 이사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【적용범위】

이사회에 관한 일체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【권한】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4조 【구성】

이사회는 이사 전원 (사외이사,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제5조 【의장】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 단,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선출한다.
-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③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후임 의장을 선임하고 그 직무를 수행토록 한다.

제6조 【감사】

-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 【관계인의 출석】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 의

제8조 【종류 및 개최장소】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네번째 목요일에 개최한다.
단, 개최 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하되, 형편에 따라 조기 또는 연기하거나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附議事項이 있을때 개최하며, 이사 1/3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.
- ④ 이사회 장소는 회사의 본사 또는 이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.

제9조 【소집권자】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후임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토록 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이사회의 개최요청에 따른 부의안건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. 또한,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의 소집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여타이사 1/3이상의 결의로써 직권으로 소집권자를 정한 후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10조 【소집절차】

- ①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개최의 일시 및 장소, 부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1조 【결의방법】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하며, 이사회의 성원수 및 의결수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③ 이사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출석이사 전원이 동시에 청취할 수 있는 전화 및 화상 및 영상물과 기타 유사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, 유선상으로의 의결권 행사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 및 간이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 결의로 이사회의 개최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.

제12조 【부의안건】

- ① 이사회에서 결정 또는 승인 할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되 세부사항은 사내의 "위임전결"을 준용한다.
- ② 이사회에서 결정 또는 승인할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되 세부사항은 사내의 "위임전결규정" 을 준용한다.
가)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주주총회의 소집
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3) 재무제표의 승인
- (4) 정관의 변경
- (5) 자본의 감소
- (6) 회사의 해산, 합병, 회사의 계속
- (7)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
- (8)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(임가공 등)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9) 이사, 감사의 선임 및 해임 (사외이사 및 사외감사 포함)
- (10)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
- (11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- (12) 주식배당 결정
- (13)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
- (14)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
- (15) 이사 및 감사의 보수
- (16)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개폐
- (17) 주식의 소각
- (18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나)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

- (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경영계획의 확정·변경
- (2) 신규사업에의 투자
- (3) 중요시설의 신설 및 휴업·폐업
- (4) 연간 시설투자 실적 및 계획의 검토·승인
- (5) 시설투자의 승인 (총 20억원 이상/건당)
- (6)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(총 20억원 이상/건당)
- (7) 이사회 운영규정의 개폐
- (8) 이사회 내 위원회설치, 운영 및 폐지
- (9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(10) 흡수 합병 또는 신설 합병의 보고
- (11) 기타 경영일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

다)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

- (1) 조직개편 및 중요한 인사 변동사항
- (2) 본점, 공장, 지점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(3) 중요한 사규, 사칙, 규정의 제정 및 개폐
- (4) 고문 및 상담역(자문역)의 위촉 및 해임

- (5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6) 비등기 임원의 승진·승급과 위촉 및 해임

라)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신주의 발행(유무상 증자)
- (2) 결손의 처분
- (3) 사채의 모집
- (4)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
- (5)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(감가상각 등)
- (6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7) 전환사채의 발행
- (8)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
- (9) 자금의 신규차입
- (10) 중요한 보증계약 및 담보제공
- (11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 (10억원 이상)
- (12) 기타 재무관리상 주요사항

마) 이사에 관한 사항

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, 복수대표이사의 결정
- (2) 이사의 직위부여 및 담당업무의 위촉 또는 해촉
- (3)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(4) 타회사의 임원 겸임

바) 기 타

- 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(청구금액 50억원 이상/건당)
- (2)외부 감사인의 선임·변경
- (3)주주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
- (4)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사)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이사회에서 경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(2) 이사회 결의사항의 수행내용
- (3) 중요한 경영실적 및 경영현안 사항 (월 또는 분기)
- (4)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13조 【경영위원회:가칭】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경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의하여 경영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경영위원회의 구성, 결의방법, 부의사항 등

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로써 정하여야 한다.

제14조【권한과 위임】

- 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서 상근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-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 담당 이사에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15조【의안설명 및 사후승인】

- ①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설명은 소관업무 담당이사가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담당이사가 유고 시에는 차선임자 또는 담당부서장이 설명한다.
- ③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先 집행하되, 시행 후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경과를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④ 상기 3항에 의거 시행 후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대표이사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16조【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】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상기 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7조【의사록】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③ 의사록은 본점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회 간사는 속기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참석 이사의 발언 내용을 이사회 의사록에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.
- ⑤ 참석이사 및 감사는 의사록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·날인 전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, 그 사본을 요청할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.

제18조【사외이사】

-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상정의안의 심의·의결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 개회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사외이사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절차 등 운영상 이의가 있는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사외이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회사에 외부인력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이사회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기 제①항 및 ②,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 이사 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9조【간사】

- ① 이사회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경영지원 담당임원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제20조【규정의 개폐】

-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